

# 오슬로 국제환경표준 환경라벨링분과 회의 참가결과(II)

박 룡 / 환경보전협회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1일까지 개최된 ISO 14000 TC 207회의는 총회와 더불어 각 6개 분과위원회(SC=Sub Committee) 회의와 분과위원회에 소속된 작업반(Working Group)회의가 동시에 개최되어 향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환경규격의 제정을위한 각 국가간의 협의가 진행되었다.

이번 회의는 총회와 각분과 위원회가 같이 개최되는 관계로 참가국과 참가인원이 많았으나, 대개는 각 분과위원회별로 모여서 작업반중심으로 규격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환경라벨링분과(SC3)의 경우는 올해 3월 13일부터 16일까지 캐나다의 토론토에서 분과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다. 또한 이번 회의의 의결로서 다음번 환경라벨링 분과회의는 우리나라의 서울에서 11월 25에서 30일경에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표 1>

그럼 먼저 환경라벨링분과의 주요한 임무

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하면,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중인 '환경마크'와 같이 제품에 부착되어 해당 제품이 환경적으로 친화적이거나, 재활용 가능하거나, 오염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환경 라벨(Environmental Label)'에 관한 것과 현재 우리 소비자들이 흔히 접하는 환경광고, 기업의 환경주장의 실질성을 증명하는 크게 두가지 분야에 관한것이다.

흔히 환경라벨링이 제품에 부착되는 라벨만에 국한된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기업이 '그린' '환경친화적인' '자연의 친구' '환경을 생각하는' 등의 용어를 광고에 이용하는데 그에 따르는 입증방법을 규정하는 것도 포함하므로써 향후 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보통 국제 협약이나 국제 규격은 우리의 실정과 동 떨어진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러한 기업의 환경성주장(Self Decoration Environmental Claim)은 국제환경표준(ISO)을 한국규격(KS)로 받아 드리면 직접적으로 규제를 받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 표준을 관장하고 있는 공업진흥청에서는 국제환경규격이 제정될 경우 이를 원칙적으로 받아 드린다는 입장이므로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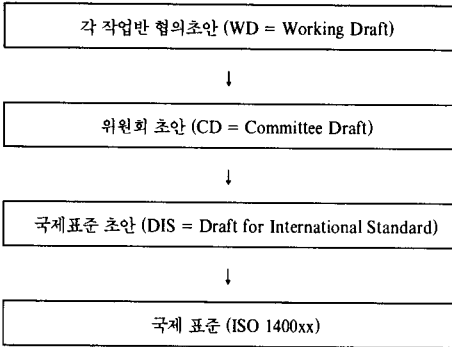
그리고, 환경라벨링은 그동안 국제무역에 있어 간접적이고 잠재적인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되는 문제 였으나, 최근에는 세계 무역기구(WTO)등 각종 국제 무역 기구에서 속

<표 1> 환경라벨분과 작업경과

작업반	일시	장소
1작업반 (WG1)	1994. 8. 29~30 1995. 6. 25~26 1995. 11	프랑스, 파리 노르웨이 오슬로 한국, 서울
2작업반 (WG2)	1994. 9. 1~2 1995. 3. 15~16 1995. 6. 27~29 1995. 11	프랑스, 파리 캐나다, 토론토 노르웨이, 오슬로 한국, 서울
3작업반 (WG3)	1994. 8. 30~31 1995. 3. 13~14 1995. 6. 24~25 1995. 11	프랑스, 파리 캐나다, 토론토 노르웨이 오슬로 한국, 서울

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부상하였다. WTO, OECD 등은 ISO 가 빨리 환경라벨링 표준을 제정하기를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환경표준이 제정되기까지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현재 환경라벨링분과에서는 위원회 초안 단계까지 접근한 것이 2건이 있다. 그것은 환경성 자기주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CD 14021, 라벨에 관한 제3자인증을 규정한 CD 14024가 현재 각국의 투표를 기다리고 있다. 특히 14024는 이번 회의에서 확정 할 예정으로 있었으나, 투표결과 15개국 찬성, 7개국 반대(우리나라 포함) 1개국 기권으로 회원국의 충분한 지지가 부족하다고 인정 되어 재협의 차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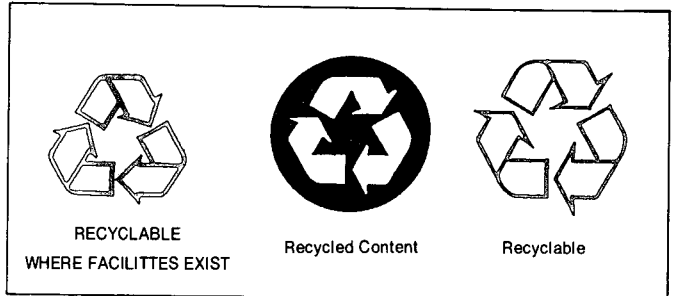
## 환경라벨링분과 작업반별 주요 의결 사항

### 제 1 분과 (WG 1)

- 국제무역에있어서의 제반 사항을 규정 서론에 언급한다.
- 수명주기 평가(LCA)를 환경라벨링에서 고려한다.
- 환경라벨링에있어 국가간의 차별이 없도록 한다.
- 환경라벨링의 국가간 상호인증을위해 라벨링 지침은 더욱 상세하고 명확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 II 2 분과 (WG 2)

- Möbius loop(그림 1 참조)을 환경라벨링의 심볼로 채택하고 그에 따르는 의미를 부여하기위해 TC 207(환경표준 기술위원회), TC 145(심볼표준 기술위원회), EU Commission(유럽연합) 등 3개기구는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 재생물질 함유(recycled content)를 나타낼때는 심볼배경을 어두운 색으로하고, 재활용 가능 물질 (recyclable)은 심볼배경을 없앤다.
- Möbius Loop의 사용은 CD 14021의 clause 4.0 및 7.2 dm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 Möbius Loop는 그 아래 반드시 그 내용(text)을 기술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심볼의 크기 및 모양은 ISO 7000에 따른다.

### 제 3 분과

- 환경라벨링이 자유무역의 장벽으로 작용해서는 안된다.
- 무역에 관한 사항을 정의함에 있어 무역전문가 및 집단의 자문을 충분히 받아서 수행하도록 한다.
- 라벨링의 표준 및 기준의 제정에 있어 관련 이해당사자와의 합의를 도출하여야 하는데 이때 이해당사의 참여 문호는 개방하나 의무적인 참여는 규정하지는 않는다.
- 표준 제정자및 기관은 참여자의 의견에 알맹이 있는 답변을 하여야하고 무조건적인(근거가 없는) 반대는 무시할 수 있다.
- Type I 프로그램의 실행에 있어 국가간의 상호 인증을 추구한다.